

# 직원징계위원회 규정

문서번호	BSKS-3-1-24
제정일자	2011.12.30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2

2011.12.30.제정 2016.04.01.개정 2019.07.16.개정 2022.04.15.개정 소관부서 : 사무처

#### 제 1 장 총 칙

제1조(적용 및 목적)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 교원을 제외한 모든 일반직원 및 계약직직원 (이하 "직원"이라 한다.)의 징계 및 재심청구를 위한 직원징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9.07.16.>

제2조(적용범위) 위원회에 관하여 법령, 정관 및 본교 각종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징계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<개정 2019.07.16.>

제3조 <삭제 2019.07.16.>

제4조 <삭제 2019.07.16.>

제5조(간사) 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 담당업무 직원으로 한다.<개정 2019.07.16.>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

# 직원징계위원회 규정

문서번호	BSKS-3-1-24
제정일자	2011.12.30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2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